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2024. 9. 30.

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 과

의안 제395호로 2024년 9월 13일 신흥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통해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 일대를 포함한 영등 포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관리 `운영의 위탁, 관계기관과의 협력,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9.19.~2024.9.24.)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적용하여 정의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이 금융산업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정부는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1)하였음.

¹⁾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1호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7.30.)를 제정하여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 영등포구 여의도 지역이 서울특별시의 유일한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기에 구청장 차원에서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책무는 유의미한 조문이라고 사료됨.

- 안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부터 제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에서는 금융사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사업, 금융 전문인력 양성,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 등을 할 수 있음 을 규정함.
- 안 제10조(행정지원 등)에서는 금융기관이 여의도에서 신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여의도로 이전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함.

○ 검토 결과

- 정부는 지난 2007년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금융중심지의 구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법」(시행. 2008.3.22.)을 제정함.
-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에서는 '09.1월 서울특별시 여의도와 부산광역시 문현 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면서 인프라 구 축²⁾에 만전을 기한 바 있음.

2) 서울특별시 여의도 금융중심지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내용		
서울핀테크랩	- 유수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주해있는 국내 최 대의 핀테크 전문공간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입주기업 혜택

구분	지원 종류	세부 내용		
		본부 및 지역본부 설립	지점 설립	
1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여의도 국제금융 센터 입주기업 ¹⁾	임대료 지원	최장 5년간 임대료의 최대 70% 지원 (국제금융오피스 입주기관)		
	채용 지원	기업의 인력규모 및 역내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내국인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월50만원 지원 (최대 6개월, 기관 1개당 최대 2억원)		
	직원 교육 및 훈련 지원	내국인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월50만원 지원 (최대 6개월, 기관 1개당 최대 6,000만원)		
	사업시설 설치 지원	사업시설 설치비용 및 기타 필수비용의 최대 25% 지원 (기관 1개당 최대 25억원)	사업시설 설치비용 및 기타 필수비용의 최대 10% 지원 (기관 1개당 최대 10억원)	

주요내용	세부내용		
	- 서울 핀테크랩은 유망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선발하		
	여 사무실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데모데		
	이, 해외 IR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금융전문대학원	- 서울시와 금융위원회, KAIST가 공동 설립한 국내		
	최초의 금융전문대학원		
	- AI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금융 MBA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주역을 육성하고자 함		
미래혁신성장펀드, R&D 지원	- 서울시는 '미래혁신펀드'를 조성하여 '22년까지 1억		
	7500만 달러 지원		
	- '22년까지 30개 프로젝트에 60억원의 R&D 지원		
서울국제금융오피스	- 서울시는 여의도에 국제금융오피스를 수립하여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을 위한 사무 공간		
	제공		
	-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와 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		

- 정부 및 서울특별시 주도하에 추진되던 여의도 금융중심지 사업이 2019년 우리 구(區)에서도 국제금융팀을 신설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³⁾을 기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체 조례 제정 없이 금융교육 및 홍보영상 송출 등의 사업에만 치중된 실정임. 더욱이 2023년 7월 국제금융팀(미래비전추진단/비전협력과 → 기획재정국/지역경제과)이 속해있던 미래비전추진단이 다른 과로 통폐합되면서 금융특구에 관한 사항이 다소 축소된 경향이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4)) 평가('24.3.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33개 도시중 서울시가 10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9월 평가 결과 (11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것임.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23년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을 확정하며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4대추진 과제5)를 수립함.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우리 구(區)에서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의도의 금융 인프라 구축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³⁾ 영등포구 자체 금융특구 주요사업('23년 기준) ※2023년 예산: 29,000천원 2024년 예산: 17,000천원

⁻ 구민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

⁻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위한 금융진흥협의회 구성 운영

⁻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디지털 홍보영상 송출

⁻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심의·승인

⁴⁾ 영국 지옌(Z.YEN)과 중국 종합개발연구원(CDI)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전 세계의 도시에 대한 금융 경쟁력을 수 치화한 지수이며 평가 분야는 기업환경, 금융부문 발전, 인프라, 인적자본, 평판 및 일반 요소 총 5개 영역임.

⁵⁾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4대 추진 과제

Ⅱ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

-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 금융회사 디지털 전환 지원
- 핀테크 지원 강화

②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 디지털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 외환제도 개선

③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 자본시장 경쟁·효율성 제고
-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④ 금융중심지 내실화

- 금융사 해외진출·투자 지원 강화
- 해외금융사 유치 지원
- 금융중심지별 맞춤형 전략 추진

<u>참 고 자 료</u>

1 금융중심지의 조성관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의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